## 흙막이공사(지하연속벽)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제6장제2절(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, 제2편제4장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) 규정에 의거 지하연속벽(Slurry Wall, Diaphram Wall)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흙막이 공법 중 트렌치굴착에 알맞게 제작된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굴착하면서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액의 공급을 병행하여 소정의 설계깊이까지 굴착한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반복함으로서 지중에 연속된 철근콘크리트벽을 형성하는 공법인 지하연속벽(Slurry Wall, Diaphram Wall) 공사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안내벽(Guide Wall)"이라 함은 지하연속벽을 만들기 위해 그 양측에 설치하여 굴착시 충격에 의해 표토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철근망 및 트레미관 삽입시 받침대 역할을 하는 철근콘크리트 벽체구조물을 말하며 보통 1,200~1,500mm 깊이로 설치한다.
  - (나) "선행굴착"이라 함은 본 굴착 이전에 본 굴착 장비로 굴착이 가능한 소정의 심도까지 먼저 굴착하는 공정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굴 삭기(Excavator)로 굴착하거나 보조크레인에



<그림 1> 안내벽 전경